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
----------	-----

제출년월일 : 2021. 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 중 행정기구 변경사항(과 명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대하여 법령 제정사항 반영하고자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조)
- 나. 정의에 대하여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용어 정의에 대한 근거 변경하고자 함. (안 제2조)
- 다. 적용범위를 각각의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호로 구분하고자 함. (안 제3조)
-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경제건설국장을 추가하고, 민원과장을 허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12.01.~12.21.)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대상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관리업무”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호”를 “제10호”로 한다.

제3조 중 “내의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검사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15세대 이상이고 10년이 경과한 공동”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5조제3항 중 “조명시설 에”를 “조명시설에”로, “이내에서 비용”을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실장, 민원과장”을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p> <p>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 제14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검사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p>	<p>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리----- ----- ----- ----- ----- ----- -----</p> <p>제2조(정의) ----- ----- 1. ----- 「공동주택관리법」 ----- -----제1항제1호----- ----- 2. ----- 제10호 -----.</p> <p>제3조(적용범위) ----- -----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15세대 이상이고 10년이 경과한 공동----- ----- ----- ----- ----- -----</p>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지원대상) ①·② (생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과장, 건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5조(지원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명시설에 -----
----- 이하의 금액-----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허가

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
소장과 건축·토목·조경·공
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
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
는 임명한다.

④ (생략)

과장-----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종전) 주택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12. 2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29.>
-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24., 2015. 8. 28.>
-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 10층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 2020. 8.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 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0.11.13.]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0. 1. 10., 2020.11.13.>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기업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기업유치, 기업지원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6.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7.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9.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22.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24.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6. 건축·농지·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의 문화관광·인허가·경제·일자리·환경·산림·안전·재난방재·건설행정·도시개발·경관에 관한 사항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도시과장 권혁수
연락처	(033) 330 - 2470